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4. 11. 13 선고 2024가단1240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주식회사 A

피고B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중식

변론 종결2024. 9. 11.

판결 선고2024. 11. 13.

주 문

-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가. 소외 C(주민등록번호 1 생략)와 피고 사이에 2023. 3. 5.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나. 피고는 C에게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등기와 2023. 7. 7. 접수 제4750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양수금 채권

원고는 C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소2623486 사건으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은 2012. 5. 24. 'C는 원고에게 3,731,964원 및 그 중 1488,365원에 대하여 2011. 6. 25.부터 2012. 5. 16.까지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12. 6. 26.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

나. C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

1) 소외 D은 2023. 3. 5. 사망하였는데(이하, '망인'이라 한다), 망인의 상속인들로는 법률상 처인 소외 E, 자녀들로 소외 F과 C, 망 G(2007. 6. 28. 사망)가 있고, 망 G의 대습상속인으로 피고와 소외 H, I가 있다. 이들이 상속지분을 보면, 소외 E은 3/9, 소외 F과 C는 각 2/9, 피고는 6/63, 소외 H, I는 각 4/63이다.

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망인의 상속재산으로 망인의 상속인들은 2023. 3. 5.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가 단독으로 소유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고(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고 한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등기과 2023. 7. 7. 접수 제47507호로 이 사건 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C의 채무초과상태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인 2023. 3. 5. 기준으로 C는 원고에 대한 양수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 중 2/9 지분 외에는 별다른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채무초과 상태였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에도 채무초과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C의 무자력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해운대구청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의 성립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원고는 C에 대한 양수금 채권을 갖고 있어서 이는

채권자취소권의 적법한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피고는 원고의 C에 대한 양수금 채권 즉, 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피보전채권이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2. 11. 22.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을 집행권원으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타채10230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2. 11. 26. 및 2012. 11. 27. 제3채무자들에게 각 송달된 사실, 원고는 2020. 2. 20.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을 집행권원으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타채820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20. 2. 24.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원고의 C에 대한 양수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위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에 의하여 중단되었고, 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압류가 해제되거나 집행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계속되므로(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다239840 판결 참조), 원고의 C에 대한 양수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피고는, 원고의 위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실질적인 추심을 위한 것이 아니라 소멸시효 중단의 목적만을 위한 것으로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의 주장만으로는 위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무효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서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C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자신의 상속분인 2/9 지분을 포기하여 이를 피고에게 귀속하는 내용의 이 사건

분할협의를 체결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분할협의를 원고를 포함한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 감소를 초래하는 사해행위로 봄이 상당하고,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2)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37001 판결 등 참조).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9다276321 판결 등 참조).

3)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분할협의를 당시 피고가 선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와 C의 인적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C의 채무초과상태를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채무초과상태인 C가 상속의 개시로 자신의 소유가 된 상속재산을 피고의 단독 소유로 귀속시키는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한 것은 이례적인 점, 피고의 악의 추정을 반복하고 선의인 수익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 중 C의 상속지분인 2/9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C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분할협의를 취소되어야 한다.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원칙적으로 원물반환인바, 피고는 C에게 위와 같이 사해행위가 성립하여 이 사건 분할협의를 취소되는 이 사건 부동산의 2/9 지분에 관하여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김주영

별지